

## 서식7」 연구 ·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

검토 사항					적합 여부														
대상자	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			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														
	연구소	연구전담부서	해당 없음																
	○ 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§ 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, 문화산업진흥기본법 § 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																		
공제 대상 비용	아래의 연구 · 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*을 지출했는지 여부			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														
	분류	해당여부																	
	1)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연구개발비**	여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부																
	2)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	여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부																
	3) 일반연구 · 인력개발비	(여)	부																
	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 · 인력개발비 **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																		
	(유의사항)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(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)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&D 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 · 부품 ·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,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 · 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																		
공제율	일반연구 ·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			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														
	1.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코스닥상장 중견기업</th> <th>일반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대40% (30% + α)</td> <td>최대40% (25% + α)</td> <td>최대30% (20% + α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α :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R&amp;D 비중 × 3배</p> 2.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 · 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대 50% (40% + α)</td> <td>최대 40% (30% + α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α :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amp;D 비중 × 3배</p> 3. 일반연구 · 인력개발비( ①, ② 중 큰 것)					중소기업	코스닥상장 중견기업	일반기업	최대40% (30% + α)	최대40% (25% + α)	최대30% (20% + α)	중소기업	중견 · 대기업	최대 50% (40% + α)	최대 40% (30% + α)				
중소기업	코스닥상장 중견기업	일반기업																	
최대40% (30% + α)	최대40% (25% + α)	최대30% (20% + α)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	중견 · 대기업																		
최대 50% (40% + α)	최대 40% (30% + α)																		
	① 증가분 방식*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( 유예기간 포함 )</th> <th>일반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%</td> <td>25% ( 중견기업 4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: ('15년 이후) 직전년도</p> ② 당기분 방식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 ( 유예기간 포함 )</th> <th>중견기업 1~3년차</th> <th>중견기업 4~5년차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일반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5%</td> <td>15%</td> <td>10%</td> <td>8%</td> <td>0~2*<!--%</td--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10% + 최대 2% { (R&amp;D비용 / 수입금액) × 1/2 }</p>				중소기업( 유예기간 포함 )	일반기업	50%	25% ( 중견기업 40%)	중소기업 ( 유예기간 포함 )	중견기업 1~3년차	중견기업 4~5년차	중견기업	일반기업	25%	15%	10%	8%	0~2* %</td	
중소기업( 유예기간 포함 )	일반기업																		
50%	25% ( 중견기업 40%)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( 유예기간 포함 )	중견기업 1~3년차	중견기업 4~5년차	중견기업	일반기업															
25%	15%	10%	8%	0~2* %</td															